

4.2.3 겸임교수임용규정

제정 1999. 11. 01.

개정 2001. 02. 28.

개정 2007. 07. 2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겸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교 겸임교수의 자격, 임용절차 및 처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자격) 겸임교수는 외부의 전문직(기업, 언론, 정·관계, 연구소 등)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직무내용이 대학에서의 연구 또는 교육내용과 유사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로 한다.

제4조 (직위) 겸임교수의 직위는 연구 및 교육경력에 따라 겸임교수, 겸임부교수, 겸임조교수 및 겸임전임강사로 구분하되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 (임용절차) ① 해당 기관장의 동의와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이를 임용한다.

제6조 (임용기간) ①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임용기간의 갱신은 제6조의 절차에 따라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행한다.

제7조 (처우) 겸임교수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권한의 의무) ① 겸임교수는 학과(부) 및 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② 겸임교수 재직 중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초당대학교 겸임교원”임을 밝혀야 한다.

③ 겸임교수는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추천서류) 겸임교수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학력증명서(학사·석사·박사학위) 각 1부
3.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 연구실적물 목록 1부
5. 기관장 동의서 1부(임용내정 후 제출)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교수는 이 내규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겸임교원 직급별 기준

연구교육경력년수 직 급	연 구 실적년수	교 육 경력년수	계
겸 임 교 수	4	6	10
겸 임 부 교 수	3	4	7
겸 임 조 교 수	2	2	4
겸 임 전 임 강 사	2	1	3

- 주) 1. 연구실적이라함은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또는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해당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중 교원 임용규정이 정하는 경력을 말한다.(교원임용규정 제13조)
2. 연구실적년수와 교육경력년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